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서를”을 “지정서를”로, “인증서의”를 “지정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를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		
1.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		
2. ~ 4. (생략)		-----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 2. (생략)		1. ----- 지정 -----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 4. (현행과 같음)		
		② 고용우수기업등지정-----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정 -----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 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정을 -----

--- 지정서-----.

⑤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

⑥ ----- 고용우수기
업등지정-----

-----.

⑦ -----
--- 지정서를 -----

----- 지정서의 -----
-----.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

<u>선</u>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u>인증서</u>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고용우수기업등 인증</u>의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선</u>----- 2. <u>지정서</u>----- -- ⑧ ----- ----- <u>고용우수기업등 지정</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연 락 처	(044) 202 - 5731